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6. 27.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7일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9일
라. 상정일자 :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제4차 행정위원회(2017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시행('17.3.30.) 및 서울시 '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'에 따라 관련 구세 감면조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 신설 (안 제17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묵)

❍ 이 개정 조례안은 2017.3.30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이 개정·시행되고, 서울시 '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'에 따라 관련 구세 감면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를 경감,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❍ 주요내용으로는,

-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 제1항에 의하면,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” 고 규정되어 있으나,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, 안 제17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을 배제함으로서, 감면율을 100%로 유지하는 것 임.
- 그 밖에 부칙으로, 적용례와 적용시한은 ‘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’에 따라 명시하였음.

❍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서,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238 호

제출연월일 : 2017. 6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대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이를 배제하여 구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적용 배제 (안 제17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4)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4.27. ~ 5.17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7조의2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1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